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업무지침

주식회사 실리콘투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올바른 윤리·준법 문화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 ①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이하 "공직자 등"이라 함)에게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 및 금품 등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 조 제1항의 "청탁금지법"에 의거한 언론사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문에 기재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부정청탁 금지)**

- ① 회사의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한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지위·권한 남용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회사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및 본인은 물론 제3자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금품 등 제공 접대 금지)**

- ① 회사의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회사 및 본인은 물론 제3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품 등을 직무 관련성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체의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편의 제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서 제공을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첨부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6.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③ 회사의 임직원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 금품 등 접대 제공

회사의 접대비의 정산 시에 "누구(참석자 전원)와 무엇(중식, 석식, 주대, 선물 등)을 왜(목적)"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적 경조금 등 접대 제공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품 등 접대 제공 외에 제2조의 적용대상자에게 별도로 개인적인 경조금 등 접대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경영관리본부와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청탁금지법의 준용)**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청탁금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교육)**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청탁금지법 및 본 지침서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 및 본 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윤리경영준수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

회사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및 본 지침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 10장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06월 01일부터 제정 및 시행한다.

## [첨부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제4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 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 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 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 13 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 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 조 제 2 항에 따른 기간(설날·추석 전 24 일부터 설날·추석 후 5 일까지) 중에는 30 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 1 호의 음식물
  - 라. 제 2 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 1 호, 제 2 호 본문·단서 및 제 3 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 2 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 만원으로 하되, 제 2 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 3 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 1 호의 음식물, 제 2 호의 경조사비 및 제 3 호의 선물 중 2 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